

서울고등법원 2022. 10. 26 선고 2022나202492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

담당변호사 정성원

피고,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주원

담당변호사 양시환

변 론 종 결 2022. 10. 5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6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5. 선고 2021가합53822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84,27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”원고는, 이 사건 전력구 공사가 시행되던 1996. 4. 24. 당시의 구 도로법(1997. 12. 13.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0조 제1, 2항이 ‘공작물·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등을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’고 규정하고, 그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(1996. 7. 1.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4조 제1항이 ‘도로 외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고,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전기통신관을 매설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.2m(공사시행으로 부득이한 경우 0.6m) 이상으로 할 것’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이 사건 지중관로는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력구 공사 당시의 구 전기사업법(1999. 9. 7. 법률 제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, 제40조에 따른 구 전기설비기준 제151조 제2항에는 관로식의 경우 매설 깊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고, 이 사건 지중관로는 관에 전선케이블을 집어넣은 다음 이를 땅에 매설하는 관로식으로 구 전기설비기준에 따라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합성수지파형관 재질의 관로로 설치된 이상, 원고 주장의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위 구 도로법 및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중관로가 위법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.“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선영, 판사 김용하, 판사 홍지영